

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0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등 금천구민상 시상부문을 일부 조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들에게 금천구민상을 시상하여 구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헌활동을 확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금천구민상 시상부문을 지역사회봉사, 미풍양속, 문화체육교육, 특별의 4개 부문으로 변경(안 제7조의2제2항)
-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(안 제8조제1항)
-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(안 제12조제6항)

-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제1조, 제4조, 제7조의2제1항, 제8조제1항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금천구민상 시상부문을 일부 조정하여 구민의 사기진작 및 공헌활동을 확산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7조의2제2항에서는 기본 시상부문을 5개 부문에서 지역사회봉사, 미풍양속, 문화체육교육, 특별의 4개 부분으로 변경,
 - 안 제8조제1항에서는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,
 - 안 제12조제6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임.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